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76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이소영 · 최혁진 · 임오경
권향엽 · 박정현 · 임미애
염태영 · 박지혜 · 허영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배출권 과잉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동안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최대 1억4천만톤의 배출권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상할당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

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 나.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뜻하는 “총무상할당비율”의 정의를 신설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100분의 80 이하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및 부칙 제2조).
- 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1항제7호).
- 라. 직전 계획기간에서 제출되지 않고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마.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2항제3호).

바. 정해진 무상할당비율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사.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으로 제한함(안 제30조제1항).

자. 과징금 부과 액수의 상한(1톤당 10만원)을 폐지함(안 제33조제1항).

차. 실태조사 대상자에 외부사업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7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본법 제8조”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를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 및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를 “방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국내외”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로 한다.

7.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연도별·부문

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이 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을 “할당대상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업체”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정부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과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호 중 “배출권 추가 할당”을 “활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를 “1톤당”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을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배출권”이란 <u>기본법 제8조</u>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u> ----- ----- ----- ----- -----. 4. ~ 6. (현행과 같음)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u>계획기</u>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u>계획기</u>

<u>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u> (이하 “ <u>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u>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u>간별 총 무상할당비율 및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u> -----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 <u>할당계획</u> ”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1. <u>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u> 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하 “ <u>배출허용총량</u>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u>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u>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u>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u>	7. <u>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연도별 · 부문별 · 업종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u>
7의2. ~ 11. (생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서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 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생략)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④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생략)

<신설>

-----.

<삭제>

④ 제3항-----

----- 할당대상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
-----.

1. -----
----- 탄소집약도 -----

----- 경우

2.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과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u>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u>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 ---. 1. ----- -- <u>활용</u>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u>조정</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 ----- ----- <u>파리</u> <u>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u> <u>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u> <u>다음 --- 것으로서</u> -----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징금) ① ----- ----- -----
--	--

대하여 이산화탄소 <u>1톤당 10만원</u>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u>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u>(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7. (생략)	----- <u>1톤당</u>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실태조사) ----- ----- ----- ----- ----- ----- <u>검증기관, 검증심사원</u> <u>또는 외부사업 사업자</u>----- ----- ----- ----- -----. ----- -----. 1. ~ 7. (현행과 같음)
---	--